

개요

본 규정서는 공립학교의 이름을 짓거나 개명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서는 또한 기부자, 기증자를 기념하거나 로컬 학교 커뮤니티에 의미가 깊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공립학교의 일부 장소에 이런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관한 상세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의 학교 시설은 본 규정서의 절차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름을 붙이거나 개명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증자 또는 기부자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것 외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학교의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I. 뉴욕시 공립학교의 이름을 짓거나 개명할 때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

- A. 모든 공립학교의 이름을 짓거나 개명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 B. 학교의 이름을 개명하는데 드는 비용은 학교 표지(signage)를 포함하여 이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비용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C. 학교들은 본 규정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명칭 변경 제안서를 이름 변경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 해의 3월 1일까지 아래 상세히 안내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D. 학교 이름을 정할 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망한 인사의 가족에게 이름의 사용에 관해 논의하도록 합니다.
- E. 신설 학교의 최초 작명
신설 학교의 이름은 신설 학교 계획 팀에서,¹ 포트폴리오 계획 담당실과 협력하여 제안하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에서 운영될 학교들의 경우 제안된 학교 이름을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로 보내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름을 검토 및 승인 받도록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제안된 이름은 학생 등록 담당실(Office of Student Enrollment: OSE)로 보내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름을 검토 및 승인 받도록 합니다.
- F. 기존의 학교에 대한 초기 작명과 기존 학교의 개명
 1. 기존 학교들의 작명에 대한 모든 제안은 작명 또는 개명을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기존의 학교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붙여졌었다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이 제안된 사실을 친인척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친인척들에게 학교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3. 학교장은 학교 이름 변경 요청이 해당 요청을 지지할 것인지의 여부가 학부모회(Parent Association: PA) 또는 학부모 교사회에서 논의 및 표결에 붙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회의 추천과 표결은 학부모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되어야 합니다.
 4. 이름 변경 제안은 반드시 이름 변경 절차를 밟기 전에 학부모회와 학교장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공립학교 이름을 짓기 위한 제안은 뉴욕시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학교 이름으로

¹ 신설학교 계획 팀은 교사, 학부모, 학생, 임시 대표(존재 한다면), 커뮤니티 기반 협력기관 대표(적용되는 경우) 및 정해진 학교 리더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이름, 기존 학교 이름의 변경 또는 학교 내 특정 공간의 명명/재명명 공개 공지문”이라는 제목의 공식적인 공개 공지문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발표해야 합니다(첨부 번호 3 참조)

6. 학부모회와 학교장이 승인을 하였다면, 학교장은 이름 변경 제안의 승인을 밝히고 학부모회의 승인과 투표를 반영하고 있는 학부모회 회의록 사본을 관할 교육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7. I.F.7, I.F.8, 및 I.F.9의 문단들은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학교들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기타 학교들은 바로 아래 I.D.10 문단과 같이 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리하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해당 커뮤니티 교육장은 반드시 제안된 이름 변경 요청을 존중하며 추천을 하여야 합니다.
 8. 커뮤니티 교육장은 본인의 추천 내용과 함께 이름 변경 제안을 적절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ommunity Education Council: CEC)의 공청회에서 발표하여야 합니다. CEC는 반드시 이름 변경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제안된 이름 변경 안의 지원 여부를 투표하여야 합니다. CEC의 투표 및 추천 결과는 공청회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9. 담당 교육장은 이름 변경 제안서와 CEC의 추천을 교육감을 대신하는 FACE에 검토 및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장은 이런 목적을 위해 “학교 이름 작명 또는 기존 학교의 이름 개명 요청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첨부 번호 1 참조). 이런 요청서는: a) 학교장의 승인을 알리고; b) 학부모회의 승인과 투표 내용을 알리는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며; c) 교육장의 추천을 포함하고 d) CEC의 승인과 투표 내용을 알리는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학교들은 반드시 앞에 언급된 단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명칭 변경 제안서를 이름 변경이 효율을 발휘하기 전 해의 3월 1일까지 FAC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2011년 9월 이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2010년 3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리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장이 교육감을 대표하여 OSE에 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장은 이런 목적을 위해 “학교 이름 작명 또는 기존 학교의 이름 개명 요청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첨부 번호 1 참조). 이런 요청서는: a) 학교장의 승인을 알리고; b) 학부모회의 승인과 투표 내용을 알리는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며; c) 교육장의 추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학교들은 반드시 앞에 언급된 단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명칭 변경 제안서를 이름 변경이 효율을 발휘하기 전 해의 3월 1일까지 OS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2011년 9월 이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2010년 3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인은 반드시 이름 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한 이름이 승인을 받으면, 교육감의 지명인은 학교장과 승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이유에도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G. 일단 학교 이름이 결정되면, 10년 내에는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의 새로운 이름에 협력 기관의 이름과 파트너십을 포함하였으며 10년 이내에 이런 관계가 단절된 경우, 교육감 또는 지명인은 학교 이름에서 협력 기관의 이름을 제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H. 어떤 보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학교에도 이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에도 뉴욕시 학교 학군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와 같은 이름을 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특수학교에도 뉴욕시 학교 학군에 있는 다른 특수학교와 같은 이름을 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II. 기부자 또는 기증자를 기념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특정 공간에 이름 붙이기

- A. 교육장은 운동장, 필드, 체육관, 스타디움, 수영장, 도서관, 카페테리아, 교실, 실험실, 연장 또는 부대 시설(특정 공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립학교의 일정한 장소에 기부자 또는 기증자를 기념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부자 또는 기증자를 기념하기 위해 학교 전체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절차는 섹션 I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B. 특정 공간은 기부나 기증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기념을 위해 이름을 붙일 때 기부나 기증을 한 개인, 파트너십, 기업 또는 재단의 이름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 C.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절차
1. 본 섹션에 따라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와 이것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선물과 기금을 받아드릴 것인지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각 학교의 교장은 제안된 이름을 승인하고 작명 제안에 대한 지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투표가 학부모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발표하여야 합니다. 학부모회의 승인과 투표는 학부모회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2. 교장과 학부모회의 허용 후, 공립학교 이름의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제안은 뉴욕시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학교 이름으로 제안된 이름, 기존 학교 이름의 변경 또는 학교 내 특정 공간의 명명/재명명 공개 공지문”이라는 제목의 공식적인 공개 공지문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발표해야 합니다(첨부 번호 3 참조).
 3. 모든 공립학교의 특정 공간에 기부자(들) 또는 기증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승인 받기 위한 모든 요청서는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trategic Partnerships
Attn: Naming Committee
52 Chambers St. – Room 305
New York, NY 10007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작명 위원회 담당실(Office of Strategic Partnerships Naming Committee: “Naming Committee”)은 필요한 운영 규칙과 절차를 채택할 것입니다. 작명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승인 요청서는 반드시 “기부자 또는 기증자를 위해 학교의 일정 지역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요청서”라는 이름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첨부 번호 4 참조). 요청서는 학교장의 승인과 학부모회의 투표와 승인을 반영하는 학부모회의 회의록 사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D. 교육청은 5년 이상은 특정 인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것을 유지할 책임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또는 뉴욕시의 이름이나 명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증자의 불법적이거나 또는 비도덕적인 활동이 발생할 시 기증자나 기부자를 기념하여 붙인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III. 개별 학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고인을 기념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특정 부분에 이름을 붙이기

- A. 비-특정, 일반 교실 또는 사무실에 이름 붙이기

학교장은 비-특정, 일반 교실 또는 사무실에 해당 학교에 특별하며, 오랫동안 기념할 만한 교육적 또는 기타 기여를 한 고인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비-특정, 일반 교실 또는 사무실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1. 이런 일반 교실 또는 사무실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요청은 반드시 논의와 투표를 위해 학부모회에서 발표되어야 합니다.
2. 제안된 이름은 학교장과 학부모 회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특정 공간에 이름 붙이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인 만이 운동장, 필드, 체육관, 스타디움, 수영장, 도서관, 카페테리아, 교실, 실험실, 연장 또는 부대 시설과 같은 학교의 공공 지역에 이름을 붙이거나 개명할 수 있습니다.

1. 이런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요청은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논의와 투표를 위해 학부모회에서 발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회의 승인과 투표는 학부모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2. 학교장과 학부모 회 양쪽의 승인을 받은 후, 공립학교의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제안은 뉴욕시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학교 이름으로 제안된 이름, 기존 학교 이름의 변경 또는 학교 내 특정 공간의 명명/재명명 공개 공지문”이라는 제목의 공식적인 공개 공지문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발표해야 합니다(첨부 번호 3 참조)
3. 학부모회는 제안된 이름을 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감을 대신하는 FAC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청서는 교장의 승인 및 학부모회의 투표와 승인을 반영하는 학부모회 회의록 사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IV. 본 규정의 면제

예외적인 상황 및 학교 시스템의 최적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인은 본 규정서의 일부 및 전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V.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섹션 I, III, 및 IV에 대한 문의:		
<u>전화:</u>	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u>팩스:</u>
212-374-2323		212-374-0076
212-374-5426	Office of Student Enroll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15 New York, NY 10007	212-374-5568
섹션II 에 대한 문의:		
212-374-2874	Office of Strategic Partnerships Attn: Naming Committee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305 New York, NY 10007	212-374-5571

학교 이름 명명 또는 기존 학교의 이름 변경 요청서

타자기를 이용하거나 인쇄체로 읽기 쉽게 작성하십시오

지역, 학군 또는 프로그램 이름: _____

작성관련 안내: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의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Room 503,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0076)로 제출하십시오.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에 있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Office of Student Enrollment (OSE),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Room 415, New York, NY 10007 (fax 212-374-5568)로 제출하십시오.

학부모 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와 논의 한 후 저희는 _____을/를 공식적으로
 (학교 번호)
 _____로 명명 하고자 합니다.

이 요청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유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적절한 네모 칸에 체크하십시오):

다음 주소지에 설립된 신규학교: _____

이전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기존의 학교.

기존 학교의 유지. 다음 문의 사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a) 이전의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_____

(b) 몇 년도의 해당 학교의 이전 이름이 명명되었습니까? _____

운동장, 필드 또는 체육관과 같은 학교의 특정 공간.

어떤 공간인지 기재: _____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1. 학교에 사망한 인사의 이름을 이용하려면,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를 첨부하십시오. 만약 개명 요청을 하려는 학교의 이름에 이미 사망한 인사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면 친인척에게 개명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면, 친인척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했던 노력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2. 제출된 사망한 인사의 이름이 어떻게 학교와 연관이 있는지 또는 학교가 위치한 곳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십시오.
3.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의 경우: a) 학부모 회의 승인과 투표를 입증해줄 회의록 사본; b) 교육장의 추천 내용 사본 및 c) 제의된 이름을 지지하는 지 여부를 반영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의 회의록 공증 사본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4.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에 있지 않는 학교의 경우: a) 교장의 승인 표명서; b) 학부모 회의 승인과 투표를 입증해줄 회의록 사본; 및 c) 교육장의 추천 내용 사본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출처:

_____ 학교장의 서명

_____ 날짜

교육장의 서명

날짜

승인: _____
OSE 또는 FACE 의 디렉터

날짜

승인: _____
교육감

날짜

제안된 학교 이름, 기존 학교 이름의 변경 또는 학교 내 특정 공간의 명명/이름 변경에 대한 공지

타자기를 이용하거나 인쇄체로 읽기 쉽게 작성하십시오

지역, 학군 또는 프로그램 이름: _____

작성관련 안내: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의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Room 503,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0076)로 제출하십시오.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관할 하에 있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Office of Student Enrollment (OSE),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Room 415, New York, NY 10007 (fax 212-374-5568)로 제출하십시오.

학부모 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와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해당 되는 네모 칸을 표시하신 후, 표시하신 네모 칸과 관련된 정보만을 기재해 주십시오):

신설 학교 또는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학교지만 이전에 이름이 없던 경우

기존 학교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다음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a) 공식적인 기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_____

(b) 몇 년도에 해당 학교에서 기존의 이름이 명명되었습니까? _____

(c) 학교 주소: _____

(d) 학교 종류: _____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학교, 주니어/시니어 고등학교, 특수교육 등)

학교의 특정 공간의 명명 또는 이름 다시 붙이기. 다음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a) 특정 공간의 명명/개명이 후원자/기부자를 위한 것입니까?

(b) 이름 붙이기/이름 다시 붙이기가 학교를 위한 특별하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사망한 인사를 위한 것입니까?

(c) 기존의 공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공되지 않음) _____

(d) 몇 년도에 기존의 이름이 명명되었습니까? (제공되지 않음) _____

다음 내용을 첨부하십시오:

1. **사망한 인사를 위해 이름을 붙이는 경우:** (a)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를 첨부하십시오. 만약 개명 요청을 하려는 학교의 이름에 이미 사망한 인사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면 친인척에게 개명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면, 친인척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했던 노력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b) 제출된 사망한 인사의 이름이 어떻게 학교와 연관이 있는지 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십시오; (c) 이름 붙이기 또는 개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학부모 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의록 사본; (d) 제안된 이름이 전체 학교를 위한 것이라면 제의된 이름을 지지하는 지 여부를 반영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의 회의록 공증 사본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후원자/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는 경우: (a) 이름 붙이기 또는 개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학부모 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제출자:

교육장 서명

날짜

학교장 서명

날짜